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국제대회 경험축적과 국제사회에 평창의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2009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군비 및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대회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군수는 조직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08. 10. 2 ~ 10. 22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9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등의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지원)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산보고서의 요구)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